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창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생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게 할 목적에서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사무소) 센터는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부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3.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운영
4. 그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임원 및 기구)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운영위원 약간명
3. 감사 1인

②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사업계획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⑤감사는 센터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5조(임원의 선임) ①소장과 감사는 본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제6조(경비) 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산학협력단의 보조금
2. 본교의 보조금
3. 외부의 출연금
4. 자체수입

제7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8조(시행세칙)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